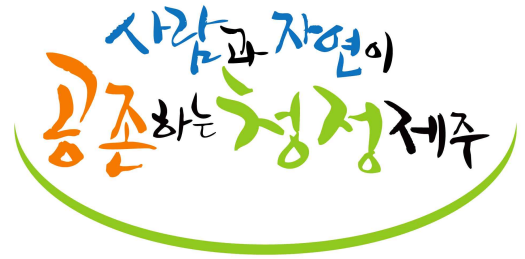


도보



제836호. 2020. 1. 29.(수)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목 차

입법예고

제2020-4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www.jeu.go.kr) 입법·고시·공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 시

제2020-12호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고시 4
제2020-13호 록인제주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 고시 5
제2020-14호 병성감정및혈청검사수수료의납부방법및절차결정변경고시 6
제2020-15호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고시 16

공 고

제2020-238호 공인 폐기 공고 16
제2020-245호 공인 등록 공고 17
제2020-248호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예고 공고 17

제 주 시

제주시고시 제2020-3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19
 제주시고시 제2020-40호 소규모 공공시설 및 위험시설 지정·고시 19
 제주시공고 제2020-287호 2020년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지원계획 공고 20
 제주시공고 제2020-288호 2020년 어선 폐윤활유 수집장 보수보강 지원계획 공고 21
 제주시공고 제2020-293호 2020년 어항 및 해안변 정화사업 지원계획 공고 22
 제주시공고 제2020-305호 2020년 제주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24
 제주시공고 제2020-306호 도 로 지 정 공 고 26
 제주시공고 제2020-321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국내여행업) 행정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신상투어) 27
 제주시공고 제2020-323호 보험미가입 일반여행업체 2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명국여행사) 28
 제주시공고 제2020-327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국내여행업)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블루오션) 29
 제주시공고 제2020-328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국내·외여행업) 행정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하이웨이관광여행사) ... 30
 제주시공고 제2020-329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일반여행업)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쥬레드스카프국제여행사) ... 31
 제주시공고 제2020-334호 일반여행업체 관광진흥법 위반(등록기준 부적합)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명국여행사) .. 32
 제주시공고 제2020-335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일반여행업)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쥬인성국제여행사) 33
 제주시공고 제2020-336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일반여행업)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쥬투어올리시스) 34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0-4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월 28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가. '20년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개정으로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됨에 따라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세율특례를 통해 '22년까지 취득세 면제 필요
- 나. 기타용수로 이용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면 과세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기존 신고납부 유지 시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고납부 방법과 부과징수 방법 병행
- 다. 장기간 세율특례로 감면이 지속된 기타용수로 이용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통해 공공재로서의 소중한 자원인 지하수에 대해 응익부담원칙에 따라 1년 유예 후 과세 전환 필요

3. 주요 내용

- 가.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방세법」 제5조제1항제6호 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한 취득세 부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22년까지 취득세율을 1,000분의 0 세율특례 적용(안 제6조의11 신설)
- 나.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방법을 기존 신고납부 방법과 부과징수 방법 병행(안 제34조)
- 다. 장기간 세율특례로 감면이 지속된 기타용수로 이용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전환에 있어 경과조치로 1년 과세 유예하고 '21년부터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제2호다목 세율(세제곱미터당 20원)에도 불구하고 사용량에 따라 세제곱미터당 30원 부과(안 제35조의2)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 전화/전송/E-mail : (064) 710-6885/ Fax (064)710-6889/ hjk539574@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0. 1. 28. ~ 2020. 2. 17. (20일간)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안에 대한 의견제출
-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12호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에 의한 단위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 22.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적용대상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2. 부과기준

가.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 부과대상 :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 시키는 시설의 설치로 인해 수도시설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2) 부과금액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 1,392,000원/ m^2

나. 조례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 부과대상 : 급수구역 내·외에 신규로 수도물을 공급하는 경우

2) 부과금액 단위사업비(순자산/시설용량) : 904,000원/ m^2

3. 적용시기 : 2020. 1. 22. ~ 추후 부과기준 고시 시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13호

특인제주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622번지 일원의 특인제주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01. 22.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업시행지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62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관광단지
 - 명칭 : 특인제주 관광단지 개발사업
3. 사업면적 : 523,354㎡
4.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특인제주 대표이사 두진강
 - 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600번지
5. 사업기간 : 2013. 12. 31 ~ 2022. 12. 31
6.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게재생략(변경없음)
7. 공사설계도 : 게재생략(변경없음)
8. 변경사유 : 자금유치 및 투자계획에 의한 정상적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기간 3년 연장
9. 인·허가 등 의제사항
 - 「관광진흥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 승인(변경사항 없음)
 -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변경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인가
11. 시행승인(변경) 조건
 - 개발사업 시행승인시 부여하는 승인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서 및 심의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사업변경 등의 변경절차를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함.
 - 건설공사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특수공종을 제외한 공종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원도급 49%,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 6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제주지역에서 생산하는 자재 반영 사용 및 지역업체 건축설계 등 참여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다만, 책임준공 등 부득이한 경우 하도급 비율을

유지하여 승인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를 협약서에 따라 구성하여 지역 농·수·축산물에 대한 계약재배와 기타 부대서비스에 대한 마을 자생단체 참여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마을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과 각종 마을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사업체 전문분야 직원들이 참여하여 마을발전 방안을 기획, 제안하는데 협력하여야 함.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14호

병성감정및혈청검사수수료의납부방법및절차결정변경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0-9호(2010. 1. 15)로 고시된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 1. 23.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다 음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의3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병성감정
2. 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혈청검사

제3조(병성감정 및 혈청검사의 신청) ①가축의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병성감정의뢰서, 별지 제2호 서식의 혈청검사신청서를 해당 검사항목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 검사시료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시험소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의뢰인 또는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병성감정·혈청검사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시험소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검사시료가 변질·부패 등으로 검사가 불가능 할 경우 검사신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조(수수료 및 납부방법) ①병성감정 및 혈청검사의 수수료는 규칙 제45조의2의 정해진 수수료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
2. 신용카드
3. 직불카드

4. 전자납부

③규칙 제45조의5에 따라 이미 제출된 검체와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의뢰인이 검사의뢰 시 해당 시료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검사를 실시한 검사자는 검사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사용가치가 남아있고, 가축전염병 전파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면제 등) 규칙 제45조의4에 따라 준용한다.

제6조 (결과통지서 등의 발급) 시험소장은 검사가 완료된 경우에 신청인에게 각각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결과통지서를 발급·교부하여야 한다.

1. 병성감정결과 통지서 : 별지 제3호 서식

2. 혈청검사결과 통지서 : 별지 제4호 서식

제7조 (검사 기간)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18일로 한다

제8조 (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시험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2. 검사업무로 인하여 다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밀검사 의뢰 등 다른기관의 추가 확인검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

②시험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연장기간 등을 지체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부 칙(제2004-28호, 2004. 8.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06-10호, 2006. 8. 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0-9호, 2010. 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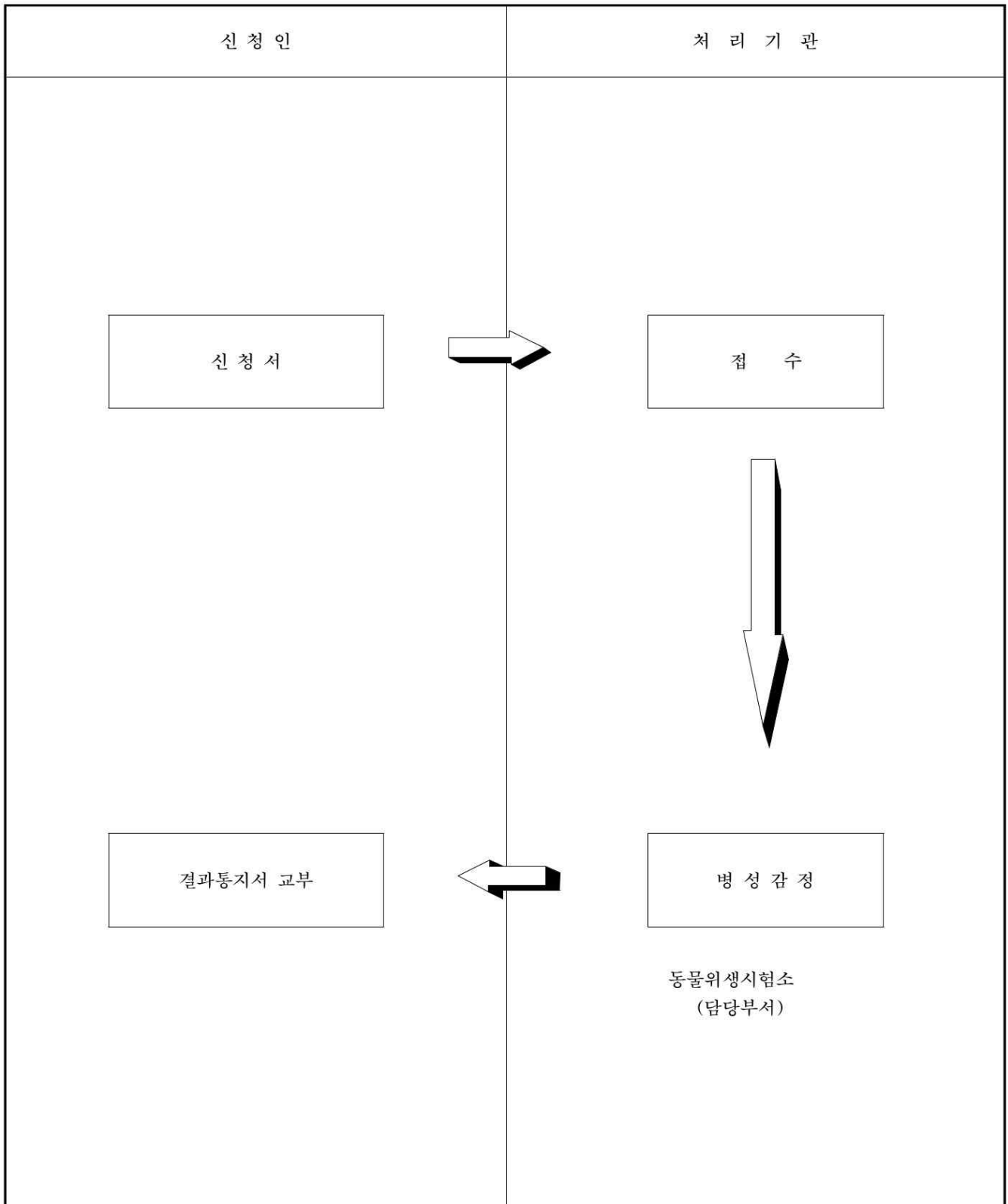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0-14호, 2020. 1. 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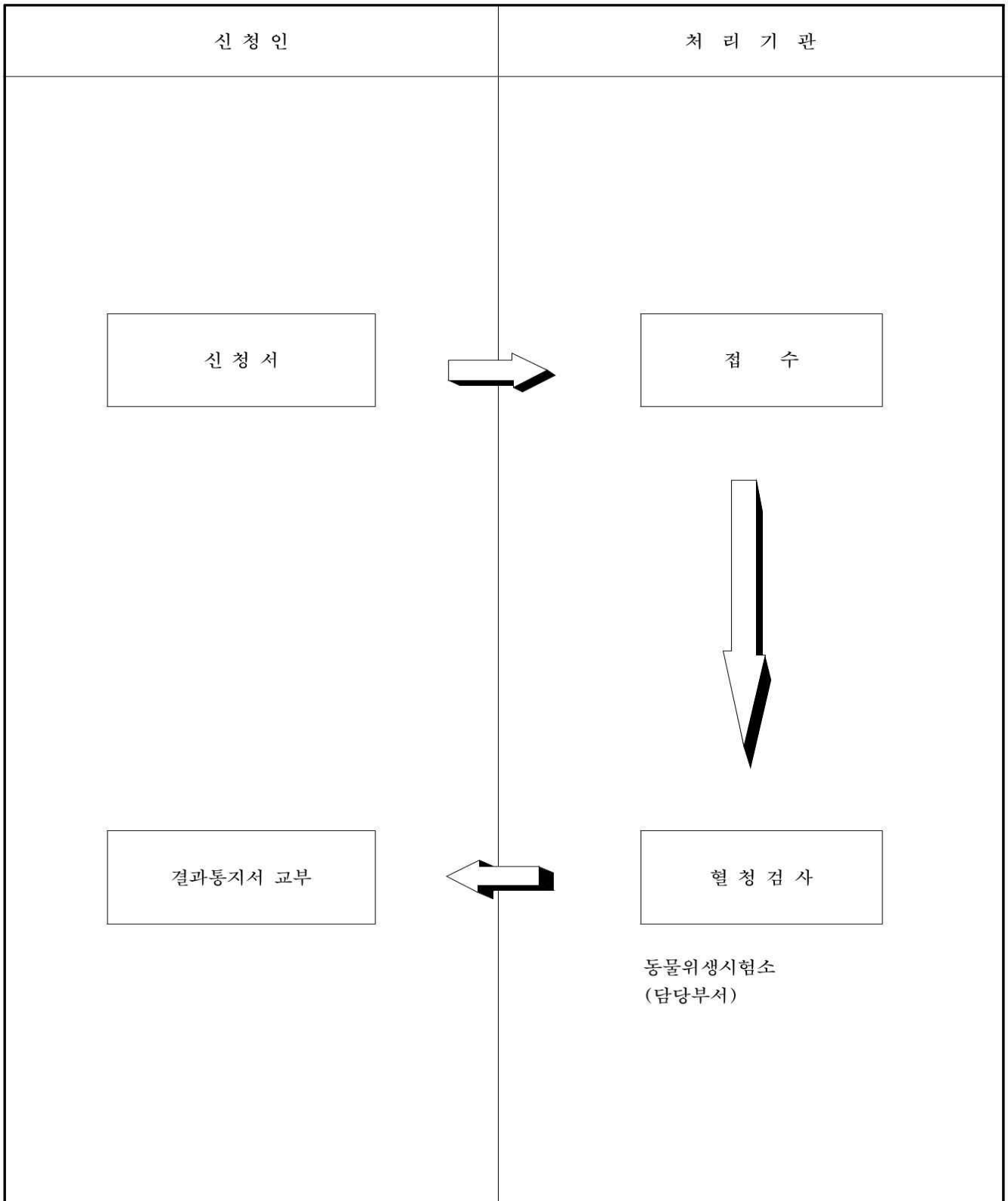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별지 제3호 서식]

병성감정결과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업소명								
	주소											
사육농장	성명			농장명								
	주소											
의뢰내역	축종			품종(명호)			연령			성별		
	시료 종류 및 수량				검사의뢰항목							
검사결과												
<p>※ 이 성적은 검사의뢰한 시료 및 검사항목에 한한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												

[별지 제4호 서식]

혈청검사결과통지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검사 신청인	성명							
	업소명							
	주소		(전화:)					
혈청검사질병명					검사방법			
사육 농장	성명							
	주소		(전화:)			농장명		
가축의 종류 (품종)	성별	연령	사육두수 (수수)	의뢰두수 (수수)	의뢰목적	비고		
<input type="checkbox"/> 검사결과								
개체번호		검사질병명		검사방법		검사결과		
(검사 개체수가 많은 경우에는 검사결과 난을 별지로 사용할 수 있음)								

※ 이 성적은 검사의뢰한 시료 및 항목에 한한 것이며, 의뢰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

[별지 제5호 서식]

접 수 증

제 호

접수일시 :

민 원 명	
민원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처리예정기한	
처리주무부서	
안 내 사 항	수수료: 원

민원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15호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인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8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고 시 명 :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2. 고시사항

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0호 멸치후리는 노래 보유자 인정

- 종별 :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0호
- 명칭 : 멸치후리는 노래
- 인정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1호 멸치후리는 노래	보유자	한성복	여	1952. 11. 19.	창(창)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 156

- 인정사유

- 어머니인 故김경성 보유자와 함께 멸치후리는 작업을 하며 자연스럽게 멸치후리는 노래의 원형을 체득했으며 노래의 역사와 내용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음
- 보유자 작고 이후에도 전수생 발굴, 개인사업장 교육장 활용 등 전승에 기여했으며 전승 의지 역시 높음

3. 지정일 : 2020. 1. 28.

4.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 전화 : (064)710-6643
- FAX : (064)710-6959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20-238호


공인 폐기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22.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폐기 공인 및 인영

공 인 명	종류	폐기부서	폐기일	인 영	폐기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정책과 수입금출납원인	특수공인	정보정책과	2020.1.22		수입금출납용 계좌 해지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20-245호


공인 등록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23.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등록 공인 및 인영

공 인 명	종류	관리부서	등록일	인 영	등록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 분임기금운용관인	특수공인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2020.1.23		조례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 추가등록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248호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예고 공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공 고 명 :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

2. 예고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3호 제주큰굿 보유자 인정예고

지정번호 및 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3호 제주큰굿	보유자	서순실	여	1961. 1. 28.	연희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11길 16

- 인정 예고 사유

- 20대 후반부터 故이중춘 보유자의 제자가 되어 제주큰굿을 전수받았으며 술선수범하는 태도로 동료 심방, 지역 주민, 학계에서도 두루 평판이 좋고 뛰어난 연행 능력, 리더쉽, 교수능력을 고루 갖추고 있음
- 故이중춘 보유자의 사후에도 전수교육 등 전수조교로서의 임무에 충실하였으며, 도내 큰굿 집전은 물론 국내외 공연, 전시, 강연 등 다양한 전승활동 펼침

3. 예 고 일 : 도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 전화 : (064)710-6643
- FAX : (064)710-6959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정책과

제주시 고시 제2020-3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처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 23.

제 주 시 장

□ 하천 점용 허가 내용

허가 번호	허가 년월일	점용 목적	하천명	점용위치	점용 면적	점용 기간	피허가자	비고
2020-3	2020. 1. 23.	상수도 관련 부속시설(어도) 개량 교체공사	광령천	제주시 외도동 2551-1번지 (제주시 외도이동 2552-14번지 인근)	15.4㎡	2019. 1월 ~ 시설물 준치 시 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고시 제2020-40호

소규모 공공시설 및 위험시설 지정·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8일

제 주 시 장

1. 소규모 공공시설 및 위험시설 지정내용

시설명칭		시군구	읍면동	지번		지정현황			사업 시기	비고
구분	명칭			시작 지점	끝나는 지점	등급	연장	폭		
세천(농로)	노형1세천 (농로)	제주시	노형동	2132-3	3755	불량	210m	2m	2022년~ 2023년	

※ 사업 시기 등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소규모 공공시설 및 위험시설 관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3. 소규모 공공시설 및 위험시설 지정일자 : 2020. 1. 28.

4. 문의처 : 제주시청 안전총괄과(☎064-728-3797)

제주시 공고 제2020-287호

2020년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1월 21일

제 주 시 장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시 관내 수산업협동조합

2. 지원 대상 사업 내용 및 지원범위

-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 사업비 : 400,000천원(정액지원)
 - 사업기간 : 2020. 2. ~ 12.
 - 사업내용 : 어업인이 조업 중에 인양한 해양쓰레기의 수매·처리

3. 신청 및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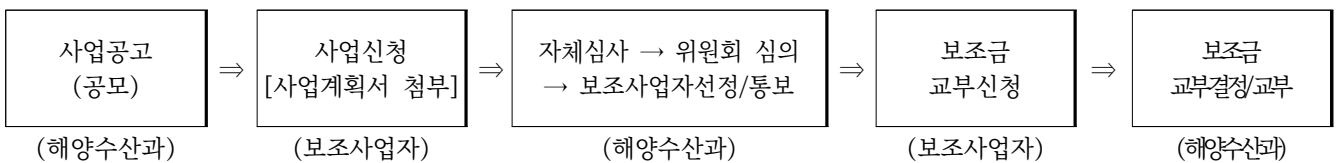
- 신청기간 : 2020. 1. 21.(화) ~ 2020. 2. 5.(수)
- 접수장소 : 제주시 해양수산과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2020. 2. 5.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신청서식은 붙임참조

- 신청시 제출서류
 - 1. 보조금신청서 1부
 - 2. 사업계획서 1부(지원사업 요약서 첨부)
 - 3. 단체(법인) 소개서 1부
 - 4. 청렴이행서 1부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5. 기타

- 사업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제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사업비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는 신청사업의 내역을 검토하여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사업자 선정 후, 제주시 반영요구사항이 있을시 협의 후 반영 하여야 함
- 지원사업 선정 단체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정된 사항에 따라 사업자와 협의·승인 과정을 통해 수정된 최종 사업계획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받고 그 이후 보조금 지급한다.

제주시 공고 제2020-288호

2020년 어선 폐윤활유 수집장 보수보강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1월 21일

제 주 시 장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시 관내 수산업협동조합

2. 지원 대상 사업 내용 및 지원범위

- 어선 폐윤활유 수집장 보수보강 지원사업
 - 사 업 비 : 30,000천원(정액지원)
 - 사업기간 : 2020. 2. ~ 12.
 - 사업내용 : 어선 폐윤활유 회수·처리 및 수집장 보수보강 1식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 1. 21.(화) ~ 2020. 2. 5.(수)
- 접수장소 : 제주시 해양수산과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2020. 2. 5.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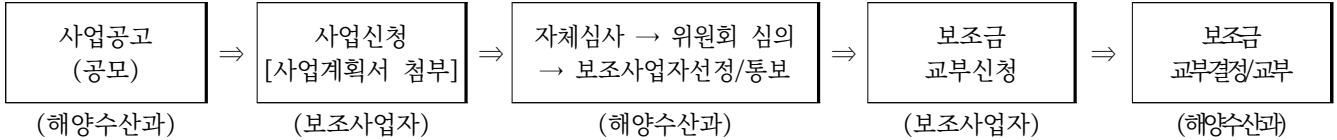
※ 신청서식은 붙임참조

- 신청시 제출서류
 - 1. 보조금신청서 1부
 - 2. 사업계획서 1부(지원사업 요약서 첨부)
 - 3. 단체(법인) 소개서 1부
 - 4. 청렴이행서 1부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5. 기타

- 사업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제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사업비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는 신청사업의 내역을 검토하여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사업자 선정 후, 제주시 반영요구사항이 있을시 협의 후 반영 하여야 함
- 지원사업 선정 단체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정된 사항에 따라 사업자와 협의·승인 과정을 통해 수정된 최종 사업계획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받고 그 이후 보조금 지급한다.

제주시 공고 제2020-293호

2020년 어항 및 해안변 정화사업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1월 21일

제 주 시 장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시 관내 해양수산 유관단체 및 환경단체

2. 지원 대상 사업 내용 및 지원범위

- 어항 및 해안변 정화사업
 - 사 업 비 : 20,000천원(정액지원)
 - 사업기간 : 2020. 2. ~ 12. 28.
 - 사업내용 : 제주시 관내 해안변 쓰레기 정화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 인건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근거 :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 보 조 율 : 보조 90%, 자담 10%(단, 초과사업비는 사업자가 부담)

3. 사업자 선정 우선 순위

- 사업신청자가 경합을 할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
 - 1순위 : 단체 정관 등에 해양환경 보호활동 수행이 명시된 단체
 - 2순위 : 단체 정관 등에 기타 해양수산 유관업무가 명시된 단체

- 3순위 : 단체 정관 등에 기타 환경보전 내용이 명시된 단체

○ 동점 발생 시, 1순위 : 해안정화활동 비중이 높은 단체 우선 선정

※ 지원제외

○ 수산업법 등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등에 의거 보조금 반환 명령대상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 1. 21.(화) ~ 2020. 2. 5.(수)

○ 접수장소 : 제주시 해양수산과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2020. 2. 5.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신청서식은 붙임참조

○ 신청시 제출서류

1. 보조금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정화인원, 정화장소, 정화일, 구입물품 사유 등 구체적 작성)

3. 단체(법인) 소개서 1부

4. 단체 정관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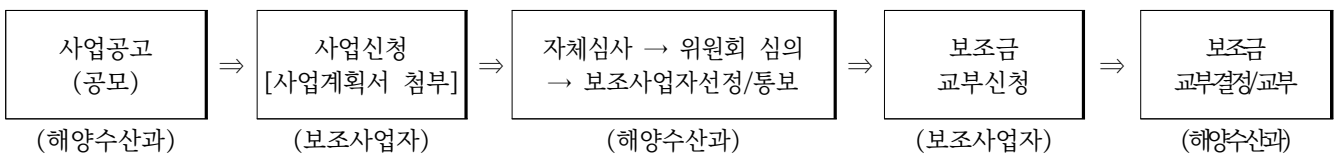
5. 우선순위 증명서류 사본 등

5.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6. 기타

○ 사업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제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사업비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는 신청사업의 내역을 검토하여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사업자 선정 후, 제주시 반영요구사항이 있을시 협의 후 반영 하여야 함

○ 지원사업 선정 단체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정된 사항에 따라 사업자와 협의·승인 과정을 통해 수정된 최종 사업계획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받고 그 이후 보조금 지급한다.

제주시 공고 제2020-305호

2020년 제주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생활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제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지방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제 주 시 장

1.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제주시에 소재를 두고있으며, 제주시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비영리문화예술단체(법인)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법인)로 설립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지방세 등 체납 단체(법인)

2.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추진기간	접수·문의처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	총90,000천원 (행사:70,000천원 / 기타:20,000천원)	2020.4월~11월	문화예술과 (728-2714)

- 지원내용 : 전시회, 연주회, 연극, 강사료 지원 등 각종 생활문화예술 활동 지원
- 지원규모 : 보조금 기준 최대 500만원 ※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보 조 율 : 총사업비의 50%이상 보조사업자 부담
 ※ 단. '3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주관의 "행사"인 경우 정액 지원
 - 공고일로부터 3년 이전 등록일 확인 가능한 고유번호증 등 증빙서류(세무서 문의) 및 활동 증빙(특별출연, 찬조출연 실적 제외) 별도 제출
- 지원제외 : 타 부서·기관(도, 읍·면·동, 제주문화예술재단 등)에서 지원받는 유사·중복 사업

3. 신청 및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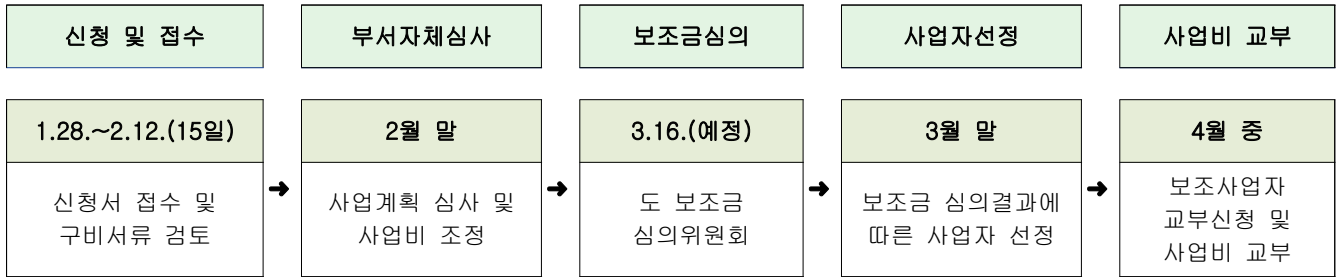
- 신청기간 : 2020. 1. 28(화) ~ 2. 12(수) (근무시간 내)
 ※ 미비서류는 마감일 이후 보완이 불가하므로 마감일로부터 3~5일 이상 여유를 두고 지원 신청바랍니다.
- 접수방법 : ① 원본 제출(문화예술과 방문) ② 한글파일 추가 제출(이메일)
 ※ 주 소 : 제주시 광양9길 10(이도이동) 제주시청 제5별관 2층 문화예술과
 ※ 메일주소 : mjkang1115@korea.kr

- 신청서류 : ①보조금 지원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단체소개서, ④활동실적증빙
⑤고유번호증(또는 최초등록일 명시된 증빙) ⑥강사 이력서(강사료 지원 신청 시)

○ 문의처 : 제주시 문화예술과 ☎ 064) 728-2714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심사방법 : 부서심사 → 도 보조금 심의
 - ① 부서 자체심사 :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구성
 - ②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사업비 최종 심의·결정
- 심사기준(안) : 사업수행역량·단체 적격성(20), 사업계획의 적절성·차별성 등(30), 사업예산의 적정성(30), 사회기여도(20)
- 결과통보 : 보조금 심의 결과 발표(3월 말 예정) 후 제주시 홈페이지 공고
- 추진일정



- 유의사항
 - 자체심사와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도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보받기 전에 사업이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불가하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대상임

5. 기타 유의사항

- 1)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사항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하여야 하며,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 지방세 체납 단체(법인)의 경우 교부 제한
- 2) 보조사업의 수행 관련 유의사항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사업 수행기간 동안 제작하는 현수막, 리플릿 등 각종 홍보물 걸면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됨을 명시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 문화예술과☎(064-728-2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청렴혁신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청렴혁신담당관)
- 신고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2억원)
- 문의사항 : 청렴혁신담당관실(☎710-4623)

제주시 공고 제2020-306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시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1월 22일

제 주 시 장

1. 제 목 : 건축허가(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3. 도로지정 내역

연번	위 치	도 로 현 황			소 유 자	비 고
		너비(m)	면적(㎡)	지목		
1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091	-	21	대	제주특별자치도	구좌읍-2831 (2020.01.20.)

4. 공고기간 : 2020.01.22.~ (공고일로부터 15일)

5.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관계도서 : 제주시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 및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제주시 건축과(☎ 064-728-36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공고 제2020-321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국내여행업) 행정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5조제1항(보험의 가입 등)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여행업)에 대하여 동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처분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처 분 명 :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

2. 당 사 자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시정기한	반송사유
2014-54	신상투어	김○우	제주시 어영길 26 (용담삼동)	2020. 2. 8.	폐문부재 등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5조 위반(보험미가입)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아.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시정 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등록 취소

5. 공고 기간 : 2020. 1. 23. ~ 2020. 2. 8. (17일간)

6.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7.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과(064-728-2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 23.

제 주 시 장

제주시 공고 제2020-323호

보험미가입 일반여행업체 2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아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의견제출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
2. 대상업체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일반여행업	2016-2	명국여행사 주식회사	이재호 (LI ZAIHAO)	제주시 노연로 54, 2층, 3호(노형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제1항 위반(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아. 법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35조 제1항 제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6.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가. 공고기간 : 2020. 01. 23. ~ 02. 11.(20일간)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3, 팩스 : 064)728-2759

다. 의견제출기한 : 2020. 02. 11까지

7.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8. 기타사항

-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2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23.

제 주 시 장

제주시 공고 제2020-327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국내여행업)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6조(등록기준)의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여행업)에 대하여 동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처분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 1. 처 분 명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 2. 당 사 자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시정 기한	반송사유
2018-35	블루오션	김○한	제주시 서광로 229, 2층 (삼도일동)	2020. 2. 10	폐문부재 등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6조 위반(등록기준 부적합)
-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1)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5. 공고 기간 : 2020. 1. 28. ~ 2020. 2. 10. (14일간)
- 6.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 7.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과(064-728-2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 28.

제 주 시 장

제주시 공고 제2020-328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국내·외여행업) 행정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4조제2항(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외여행업)에 대하여 동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처분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처 분 명 : 시정명령(1차 행정처분)

2. 당 사 자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처분명	반송사유
112 (국내)	주식회사 하이웨이관광여행사	김○돈	제주시 연동4길 6-2, 2층 (연동)	시정명령	폐문부재 등
22 (국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4조제2항 위반 (무단 휴업)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사. 법 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시정명령	등록취소	-	-

5. 공고 기간 : 2020. 1. 28. ~ 2020. 2. 10. (14일간)

6.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7.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과(064-728-2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 28.

제 주 시 장

제주시 공고 제2020-329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일반여행업)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4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일반여행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처분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 사 자

업종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일반여행업	166	(주)레드스카프국제여행사	문용만 (WEN LONGWAN)	제주시 노연로 42, 3층 비-303호(노형동, 정한오피스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4조제2항 위반 (무단휴폐업)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4차
바. 법 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시정명령	등록취소	-	-

5.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가. 공고기간 : 2020. 01. 28. ~ 02. 12.(16일간)

나. 의견제출 기간 : 2020. 02. 12.까지

다.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3, 팩스 : 064-728-2759

6.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7.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과(064-728-2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28.

제 주 시 장

제주시 공고 제2020-334호

일반여행업체 관광진흥법 위반(등록기준 부적합)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4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의견제출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사자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일반여행업	2016-2	명국여행사 주식회사	이재호 (LI ZAIHAO)	제주시 노연로 54, 2층, 3호(노형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조 등록기준 위반 (사무실 미확보)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제35조 제1항 제1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5.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기한

가. 공고기간 : 2020. 01. 28. ~ 2020. 02. 12.(16일간)

나. 의견제출 기한 : 2020. 02. 12.까지

다.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3, 팩스 : 064)728-2759

6.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7.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2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28.

제 주 시 장

제주시 공고 제2020-335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일반여행업)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5조(보험의 가입 등)의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일반여행업)에 대하여 동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청문실시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4차 행정처분(등록취소)

2. 당 사 자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청문일시	청문장소
2017-4	(주)인성국제여행사	장동신 (JIANG DONGXIN)	제주시 신대로 12길 51, 605호 (연동, 로얄쇼핑오피스텔)	보 험 미가입	20.02.12.(수) 15:00	제주시청 5별관 2층 소회의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5조 위반(보험 미가입)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아.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5. 공고 기간 및 의견제출처

가. 2020. 01. 28. ~ 2020. 02. 12. [16일간]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3, 팩스 : 064-728-2759

6.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7.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과(064-728-2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28.

제 주 시 장

제주시 공고 제2020-336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일반여행업)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7조(변경등록)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일반여행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에 행정처분 통지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청문실시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4차 행정처분(등록취소)

2. 당 사 자

업종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일반여행업	2017-14	(주)투어올리시스	인관송 (YIN GUANXIONG)	제주시 과원로 28, 지하(연동)	변경등록 (소재지) 위반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7조(변경등록) 위반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2) 변경등록 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5. 공고 기간 및 의견제출처

가. 공고기간 : 2020. 01. 28. ~ 02. 12.(16일간)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3, 팩스 : 064-728-2759

6.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7.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과(064-728-2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28.

제 주 시 장